

#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 내규

개정 2022.03.08.

제정 2020.03.01.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관」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교육의 자체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한의학교육 평가 업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한의과대학장 소속하에 한의학교육 자체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한의학교육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, 소위원회 내에 당연직과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·연구부학장이 된다.

**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의학교육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5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와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, 평가영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1. 기획위원회

2. 연구위원회

3. 행정지원팀

②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

2. 위원 과반수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기능) ①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평가인증 대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업무 수행
3. 중간 및 최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4. 평가인증 관련 항목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개선
5. 그 밖에 한의학교육 인증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기타)**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명직 위원은 이 내규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개정 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